

##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54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4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# 가. 심사경과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2202205	정 부	2024. 7. 2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418회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9.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</li> <li>·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2.) 상정 후 축조심사</li> </ul>
2212492	박 정의원	2025. 8. 2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 (2025.11.1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</li> <li>· 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2.) 상정 후 축조심사</li> </ul>

나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4. 2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
다. 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(2026. 4. 7.)  
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  
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 
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  
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,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  
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 
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사회적  
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  
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 
협력 및 사업 지원,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  
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  
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  
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 
완화하려는 것임.(안 제16조의3,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, 제17조  
제1항)

##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협회의 설립)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목적
2. 사업내용
3. 명칭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. 회원의 자격 및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
6. 임원에 관한 사항
7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총회·이사회<sup>의</sup>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

2.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·시행

3.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<sup>에</sup> 관한 사업

4.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
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<sup>을</sup>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의4(사회적기업 공제사업)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 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,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호<sup>V</sup>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제사업의 범위

2. 공제계약의 내용

3. 공제금

4. 공제료

5.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

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의5(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·감독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·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“4월 말 및 10월 말까지”를 “4월 말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6조의3(협회의 설립)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목적</u></li> <li><u>2. 사업내용</u></li> <li><u>3. 명칭</u></li> <li><u>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</u></li> <li><u>5. 회원의 자격 및 가입·탈퇴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6. 임원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

7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총회·이사회의 운영 등에  
필요한 사항

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
는 사항

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  
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  
의

2.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·  
시행

3.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·단체  
간의 연계·협력·조정에 관  
한 사업

4.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  
업 공제사업

5.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 
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사업

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  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 
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  
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 
있다.

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

<신 설>

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 
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
한다.

제16조의4(사회적기업 공제사업)

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  
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  
로부터 보호, 재기 등을 지원하  
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 
수 있다.

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  
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 
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 
인을 받아야 한다. 공제사업규  
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 
한 같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  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 
함되어야 한다.

1. 공제사업의 범위
2. 공제계약의 내용
3. 공제금
4. 공제료
5.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  
비금

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 
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

<신 설>

제17조(보고 등)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의5(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·감독 등)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·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17조(보고 등) ①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4월 말까지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